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19호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9조(예고 및 공모 등) 및 「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」 제18조(예고 및 공모)에 따라, 2024년도 해양수산연구개발 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05일
해양수산부장관

2024년도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통합 공고

1. 개요

□ 지원 규모: 11개 사업 22개 과제 177.82억원 이내

사업명	연구개발과제명	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(전체 연구개발기간)	'24년 연구비	과제 공고	선정 평가	연구 착수
CO2 수송-주입 복합 기능선박 기술개발	CO2 수송-주입 복합기능선박 기술개발	150억원 이내 ('24년~'28년)	1347억원	1월	2~3월	4월
지상파향법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	지상파향법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	230억원 이내 ('24년~'27년)	24.3억원	1월	2~3월	4월
대체해조육 및 수산 배양육 기술개발	대체해조육 상용화 기술개발(2개 과제)	115억원 이내 ('24년~'28년)	10억원 이내	1월	2~3월	4월
	수산배양육 생산 기술개발(2개 과제)	171.2억원 이내 ('24년~'28년)	24.2억원 이내	1월	2~3월	4월
민군활용 시 기반 융복합 해양데이터 분석기술 및 보안 플랫폼 구축	민군경 활용 블록체인 기반 해양데이터 보안 플랫폼 구축	100억원 이내 ('24년~'28년)	16억원	1월	2~3월	4월
	AI 기반 민·군·경 융복합 해양데이터 분석·활용 기술개발	100억원 이내 ('24년~'28년)	8억원	1월	2~3월	4월
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	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	360억원 이내 ('24년~'30년)	10억원	1월	2~3월	4월
국제표준기반지상파- 위성통합 VDES 체계 기술개발	VDES 국제공동개발 및 협력 실증	75억원 이내 ('24년~'26년)	12.5억원	1월	2~3월	4월
해양디지털항로 실증기술개발	한-유럽첨단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구축및공동연구	296억원 이내 ('24년~'28년)	24억원	1월	2~3월	4월

사업명	연구개발과제명	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(전체 연구개발기간)	'24년 연구비	과제 공고	선정 평가	연구 착수
해양위험유해물질 (HNS)배출등 관리기술개발	해양환경잔류성오염물질 관리기술개발	92억원 이내 (‘24년~‘28년)	5억원	1월	2~3월	4월
해양방사능 오염 사고 대비 신속탐지· 예측기술 개발	태평양 도서국 해양방사능 관측 및 국제공동연구	175억원 이내 (‘24년~‘28년)	20억원	1월	2~3월	4월
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	한-카리브해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지원	40억원 이내 (‘24년~‘31년)	5억원	1월	2~3월	4월
해양수산업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	산학연 시설·장비 활용역량강화(6개 과제 이내)	미정 '24년~'26년	5.35억원	1월	2~3월	4월

* 연구개발기간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과제 수 등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. 신청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 제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

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>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>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
<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>

1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3. 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
4. 국립·공립 연구기관
5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6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
7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

<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>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3.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
4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
5.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
6.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

3. 신청방법

□ 공고 및 신청방법

- (사업공고)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해양수산부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등에 공고 예정
- (제출서류) 세부사업별 공고 시 공고문 참조

□ 신청방법: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온라인 접수(iris.go.kr)

- ※ 마감시한까지 [정보입력], [저장], [최종확인] 완료 후 [제출]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됨
- ※ 아래의 '사전 준비사항'을 확인하고, '신청 후 확인 사항'을 반드시 확인
- 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

※ 사전 준비사항(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)

-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사업 공고문 확인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
- 각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연구책임자 그리고 참여연구자 모두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 정보 업데이트 필요(iris.go.kr)
 - *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경우: IRIS 회원가입 후 발급
 - * 국가연구자번호가 있는 경우: IRIS 로그인 후 '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(NRI)'을 클릭하여 국가연구자번호 전환
 - * 신청기관 대표자의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제 신청 및 접수 불가

※ 신청 후 확인 사항

- [신청내역 조회/수정]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'신청/접수여부'가 '제출완료'로 표시되는지 확인
-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오류가 없는지 확인
 - *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훼손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* 공고 및 접수시스템 문의사항은 IRIS 콜센터(1877-2041, 09:00~18:00) 또는 IRIS 홈페이지 '사용문의' 게시판 활용

** 개별공고 시에 접수마감 전, 과제신청을 완료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

4. 공모절차 및 일정

□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모절차 및 일정

구 분	시행주체	주 요 내 용
2024년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계획 공고 (1월~2월)	해양수산부 (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개발과제 목적,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, 보안과제 분류여부, 신청 자격,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등
↓		
신청서류 접수 (2~3월)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·단체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IRIS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*에 제출 * IRIS 접속주소: https://www.iris.go.kr/ ** 신청서류 접수 결과, 재공고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
↓		
사전 검토 (2~3월)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해 참여제한 해당 여부,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선정
↓		
선정평가 (2~3월)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가실시: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*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함
↓		
연구개발과제 선정 (3월)	해양수산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평가 결과 확정 다만, 혁신법 제14조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
↓		
연구개발과제 협약 (4월)	해양수산부 (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)/ 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제출 해양수산부(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)-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* 협약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
↓		
연구개발비 지급 (4월)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

*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세부사업 또는 신규 연구개발과제별로 상이함

□ 그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

-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연구개발성과의 등록·기탁, 연구개발정보의 수집·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
- 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확충·고도화 및 관리·활용에 관한 사항
-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*

* 협약 체결 시, 연구실 안전교육·훈련 이수확인서(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의 2서식)를 첨부서류로 제출

5. 문의처

□ 사업별 문의처

사업명	해양수산부	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	연락처
CO2수송-주입복합 기능선박기술개발	해양보전과	생명환경팀	02-3460-0312
지상파항법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	항로표지과	해사항만팀	02-3460-0331
대체해조육 및 수산 배양육 기술개발	수출가공진흥과	수산팀	02-3460-0324
민군활용AI기반융복합해양데이터분석 기술및보안플랫폼구축기술개발	국립해양조사원	해양팀	02-3460-0306
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	해양개발과	해양팀	02-3460-0308
국제표준기반지상파-위성통합 VDES체계기술개발	첨단해양교통관리팀	해사항만팀	02-3460-0331
해양디지털항로실증기술개발	해사안전정책과	해사항만팀	02-3460-0331
해양위험유해물질 (HNS)배출 등 관리기술개발	해양환경정책과	생명환경팀	02-3460-0313
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 신속탐지·예측기술개발	해양개발과	해양팀	02-3460-0302
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	해양개발과	글로벌인재양성팀	02-3460-4084
해양수산산업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(산·학·연 시설·장비 활용역량강화)	해양수산과학 기술정책과	인프라공유센터	02-3460-9802